

#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분석

김재성

## 목차

1. 공공감사의 의의
2. 내부통제제도
  - 가. 내부통제의 의미
  - 나. 내부감사, 옴부즈만제도, 준법통제제도 등
  - 다. 내부통제의 목적과 중요성
3.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 가. 미국
  - 나. 영국
  - 다. 캐나다
  - 라. 일본
  - 마. 외국 사례의 시사점 도출
4.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분석
  - 가. 감사운영 현황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
  - 다. 공공기관에서의 내부통제제도
5.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 가.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
  - 나. 결어: 개선방향 모색

## 참고문헌

[부록]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분석

## 1. 공공감사의 의의

- 감사(監査)는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자료·기록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고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임 (감사원, 공공감사용어집)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인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 활동에 관한 조사, 점검·확인·분석·검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계검사활동과 직무감찰활동을 의미함.
  - 이러한 감사기능의 권한은 단순한 조사활동이나 점검, 확인 시정 조치의 의미보다 그 개념이 훨씬 넓고 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 실정법 하에서도 그러함
- 공감법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기반이 마련됨
  - 동법의 제정(2010.3.22.)으로 감사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 등 감사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의 내실화와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기초가 됨

표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선행연구 검토) 공공감사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다양했음. 국회의 국정감사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의 정부부처 감사,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에 관한 논의가 공공감사 연구에서 대부분임

▮ 안영훈(2005)은 자체감사는 주로 직무감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등에 맡기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존재를 분명히 하여 사전감사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지방의회의 감사기능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윤태범 외(1995)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해 독립적, 전문적, 합의제 형의 감사위원회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감사직렬의 구성, 감사인사 교류 및 교육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음

▮ (논의의 필요성) 공공감사는 공공부문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여 정부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불공정을 시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함

• 동시에 공공기관의 주인(Principal)인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인(Agent)인 정부가, 다시 주

인인 정부와 (복)대리인인 공공기관에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만경영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즉 기관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이러한 감사운영이 공공기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후적, 외부적 통제가 아닌 사전적, 자율적 의미로서의 감사 및 관리로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공공기관의 감사운영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내부통제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2. 내부통제제도

### 가. 내부통제의 의미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관리자가 조직임무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설정한 계획·규정·방법·절차 및 수단으로 정의됨
  - 내부통제제도란 회사 경영자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말하며, 회계제도, 통제환경 및 통제 절차로 구성됨
  - 내부통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미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기업의 부정방지, 업무의 효율성·유효성의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내부통제는 회사 경영자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말하며 회계제도, 통제환경 및 통제절차로 구성됨
  - 국내를 비롯해 해외의 기업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오류나 부정을 충분히 잡아내고 수정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1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업에 있어서 내부통제 시스템은 회계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인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 및 신뢰도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내부통제는 행정 관료가 갖는 재량권의 일탈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함.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관료는 자칫 민(民)의 이익에 우선하여 자신의 이익 확보에 전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미국회계사협회(AIA, 1949)의 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를 기업의 자산을 보전하고 재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경영효과를 높이며 정해진 경영방침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채용된 조직계획 및 조정방법과 수단을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함

- 내부통제의 개념은 시대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개념의 통일화를 시도

- COSO는 내부통제란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확보 및 관련 법규의 준수라는 3개의 목적에 관해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및 그 외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정의

- 내부통제가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이라는 5개의 내부통제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함

- 내부통제는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감사기관, 일반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동시에 일련의 프로세스임

## 표 2 내부통제와 COSO체계

□ 내부통제에 관한 세계적인 모델은 1992년 미국의 Treadway위원회의 자원조직위원회(The Co-sponsoring organization of Treadway Commission)가 공표한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COSO I)임

- 조직의 내부통제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6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정직성 및 윤리적인 가치관(Integrity and ethical values)
  - 경영철학과 스타일(Management's philosophy and operating style)
  - 조직의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 권한과 책임의 설정(Assignmen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 인적자원관리의 방침과 절차(Human resource policies and practices)
  - 조직원의 경쟁력(Competence of personnel)

□ COSO는 2004년 9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를 발표함

- COSO II라고 불리는데, 기존의 COSO I 이 업무, 재무정보, 준법사항에 관한 부분에 경영전략부문을 추가한 부분이 특징으로 회사의 비전과 연결되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전략(strategy)사항임
- 핵심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 내부통제는 리스크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며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며 경영자가 경영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

○ CSA(Control Self Assessment: 자체통제, 사전통제, 내부감사)에서 중요한 4가지 덕목은 성실성(integrity), 공정성(objectivity), 비밀성(confidentiality), 적격성(competency)임

□ 결국 내부통제, 내부(사전)감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구성원의 조화와 인성을 개발하는 부분이 핵심으로, 과거 비리 적발이나 회계검사, 복무의 통제를 넘어서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임

## 나. 내부감사, 음부즈만제도, 준법통제제도 등

### 1) 내부감사

■ 내부감사(Internal Audit)란 한 조직의 업무수행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증(assurance)과 컨설팅(consulting)활동임 (국제내부감사인협회, 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 내부감사는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그리고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시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됨

• 정의의 요점은 ①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 ②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 증진에 기여 ③업무수행의 가치를 증대 및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검증과 컨설팅활동, ④독립성과 객관성, ⑤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 등임

- 이러한 활동은 조직이 위험관리, 통제 및 거버넌스 과정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법상의 내부감사와 경영진 등이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의 내부감사 즉 내부통제를 포괄하여 ‘광의의 내부감사’라 함. 내부감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협의의 내부감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지휘를 받아 회사 내 자체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조직(예: 준법감시인, 내부회계관리자 등)에 의하여 수행하는 자체 통제 또는 모니터링 활동

- (법상의 내부감사) 상법상의 법정내부감사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법률상 주어진 권한에 의거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직무수행활동

▮ 내부통제와 내부감사가 혼용되는데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내부통제는 건전한 재무관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부감사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고 볼 수 있음

- 내부통제는 사전적인 지출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인증(assurance)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

- 내부감사는 사후적인 합법성, 성과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 내부감사가 내부통제와 구분되는 점은 내부감사는 행정부나 내부통제구조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임

표 3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비교

	내부감사	외부감사
적용기준	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기준	INTOSAI, IFAC, PCAOB 등의 감사기준
위치	조직의 일부, 주요고객은 조직의 관리층과 이사회	조직구조 외부의 기구로 법령에 의해 규정
초점	재무, 운영, 인증(assurance), 내부통제, 자문, 거버넌스, 비리조사 등	재무제표, 내부통제
역할/범위	조직의 모든 측면(재무적, 비재무적)을 고려하며 조직의 운영,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개선 지원	주요 역할은 조직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 제공, 기관의 성과에 대한 검토 포함
독립성	감사대상활동으로부터 독립	감사대상조직으로부터 독립

내부통제에 대한 접근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든 측면 고려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형(materiality) 측면
비리에 대한 접근방법	조직의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부정행위 관심	재무적 비리만 관심

## 2)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감사제도, 준법감사인 제도와 함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덕성 결여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예방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을 위한 제도임

- (유래)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osmann, 영어로는 agent(대리인)을 의미하며 부정한 행동,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

▮ (의미)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능의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의 통제 실용성이 저하되자 보완책으로 국회를 통해 조사관을 임명하여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 통제제도임

- 정부, 의회로부터 직무성 독립, 정치적으로 중립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보급) 스웨덴(1809년), 핀란드(1919년), 노르웨이(1952년), 덴마크(1953년) 채택. 2차 세계 대전이후 뉴질랜드(1962년), 영국(1967년) 등으로 보급되고 그 이후 미국, 캐나다 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

- 구 소련은 공산당의 감시기구로 채택. 행정권의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은 군대 옴부즈만 제도인 방위담당의회 총장을 둬. 약 100여개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 (고려사항) 옴부즈만 제도는 제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내부제보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비밀 준수(confidentiality), 내부제보의 효율적 처리, 다양한 비대면 접촉 채널의 통합관리 등을 고려해야 함

- 제보자는 제보할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부패적 행위인지, 제보 동기가 객관적이고 사회공익을 위한 것인지, 제보를 내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할 것인지, 기명, 무기명 여부 결정,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문서화하여 보고, 보복을 예상하고 보복시는 보복내용을 기록 등을 고려해야 함

▮ (효과) 1)감사제도, 준법감사인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 2)구성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경영성과 제고를 가져옴, 3)사전 해결로 기업위기를 극복해 대

의신인도 개선을 함, 4)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함

▮ (우리나라) 1994.5.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2005.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

• 2008.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 2013. 현재는 금감원 등을 비롯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2008.2~)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 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통합했음.

• (기능) 고충 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의, 소송을 통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보호 등의 기능을 함

• (정책 방향) 고충,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단체에 “맞춤형 방문 서비스” 실시, 청렴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시행(공직자 청렴 교육실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3) 준법통제제도(Compliance)

▮ (의미) 영어 comliance의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준법통제는 법령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요청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 미국에서의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법규준수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함.

• 내부통제의 일부 축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상 접할 수 밖에 없는 제반규범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제 및 정책시스템으로 정의됨

• 소극적 개념으로는 법규범 준수여부 감시 및 위반조사

• 적극적 개념으로는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을 통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지속적 준법교육 및 점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준법통제체제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임

■ (외국의 부패방지법) 현재 반부패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극소수에 불과하며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중국 등은 아직까지 관련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뇌물수수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도 처벌의 대상이 됨. 따라서 영국 기업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관료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됨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해외부패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1977년 제정, 시행된 미국 연방법임

• FCPA 위반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해당회사는 거래당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회사는 2천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영국 뇌물 수수법(UK Bribery Act)은 영국 기업뿐 아니라 영국에서 영국기업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자사와 협력하는 에이전트 또는 계약자 같은 제3의 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뇌물 혐의가 자사의 사업 취득·유지·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법적 책임의 한계가 영국기업이 행한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영국기업의 해외지사, 자회사,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해외 에이전트 및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행한 뇌물수수행위까지 사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자국 내 영국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에 변화가 예상됨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보다도 그 범위가 넓으며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도 더 심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만약 영국기업의 뇌물수수가 드러나면 무제한적 벌금에 최고 10년형, 정부조달 참여금지, 이사회 자격박탈, 자산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됨

■ (우리나라) 1997년말 IMF관리체제 이후 준법통제제도의 도입이 강제됨. 세계은행에서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이 요구. OECD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정 회원국에 권고

• 1998.9.21.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확정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금융권에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의무화

• 준법감시제도는 2000년 1월에 증권거래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는 금융관련법제의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됨

▮ (현행법상의 준법통제제도) 상법상 이사의 의무, 감사의 권한과 의무,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은행법 제23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8조, 보험업법 제1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등에서 내부통제기준 제정의무를 각 기관, 금융기관에 부과, 준법감시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준법감시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전반 의미로 사용됨. 구성요소로는 1)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2)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3)준법감시조직(부서), 4)준법감시매뉴얼, 5)임직원 윤리강령, 6)모니터링, 7)준법에 대한 임직원 연수와 교육 등

▮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2가지로 규정되어 있음

•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 표 4 내부통제제도의 관련 법령에서의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전문개정 2009.2.3]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내부통제, 내부감사, 자체감사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용어가 실무적으로는 교환적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음

- 자체감사에는 조직 내부 활동에 대한 감사(즉, 본부감사)와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어 본부감사와 유사한 내부감사보다 그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 내부 통제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화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개별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검사 등 합법성 감사에 초점이 주어졌으나 점차 정부의 정책·사업 등 제반활동에 대한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왔음

표 5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 입법 배경으로 2000년대 들어 분식회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 중에는 유명한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 우수한 대기업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점임
  - 이러한 대기업이 몇 달 만에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함
  -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던 외부 회계법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해주었던 점도 이 유입

○ 경영자의 모럴해저드가 크게 문제되었는데, 엔론(Enron)사의 경우 파산으로 인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투자자인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본 반면 경영자들은 거액의 부를 실현함

□ 2002년 7월 30일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공법 107-204)은 증권법에 의거한 혹은 여타의 목적에 따른 기업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위반기업 및 임원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였음

○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외부감사인의 무결성 및 독립성을 증진하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식분석가들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며 무엇보다 임직원과 퇴직연금 생활자 및 투자자들을 회계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총 11편으로 구성된 이 법은 회계감독위원회의 신설, 감사의 독립성, 기업의 책임, 회계공시 및 주식 분석가의 이해상충 등에 대해 다룸. 기업부정 및 사기범죄 책임에 관한 법, 화이트컬러 범죄 처벌 개선에 관한 법, 기업부정 및 책임에 관한 법이 포함됨

## 다. 내부통제의 목적과 중요성

▮ (목적) 내부통제의 목적은 행정을 국민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데 있고, 특히 COSO 보고서에서는 조직의 내부통제 목적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신뢰성있는 재무보고, 그리고 법률과 제도에 대한 준법성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내부감사가 조직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공공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즉 감사자로부터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그리고 통제권의 소유자로부터 준(準)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진화해왔음

• 이러한 역할 변화는 내부감사가 개별 지출행위나 행정활동이 범규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는데서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사하는 방법론상의 변화도 초래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인력의 확보가 내부감사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두 가지 척도는 독립성과 전문성임

• (독립성) 독립성은 감사자의 역할이 공공자원의 사용 및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감사자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독립성은 구조적(structural), 환경적(environmental), 개인적(personal) 차원에서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전문성) 전문성은 내부감사인협회의 국제기준에 의하면 내부감사인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기타능력(competency)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숙련성(proficiency)을 말함

표 6 내부통제의 역할 변화

감시자 (policeman)	⇒	가치창출자원 (value adding resource)
통제 소유자 (the owners of control)	⇒	통제를 활용하여 조력하는 준컨설턴트 (quasi-consultant)
순응기반 접근방법 (compliance based approach)	⇒	과정중심/ 부가가치적 접근방법 (process driven/ value added approach)
재정 중심적 (finance oriented)	⇒	목표중심적(objective oriented)
자격없는 직원(unqualified) 중심	⇒	전문감사인과 사업전문가 중심 (qualified auditors and business professionals)
은퇴를 위한 쉼터 (green pasture)	⇒	고급관리자를 위한 훈련장 (training ground)

■ (중요성) 보편적으로 내부통제란 조직 내의 각종 계획수립·조정과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적인 절차나 장치를 말함

- 조직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활동이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공식화된 제도와 절차로서 중요함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 자체에 의한 자율적 내부적 통제이며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음

-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견지에서 통제가 필요
- 내부통제제도 구축의 핵심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오류 등의 위험방지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와 세부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음
- 조직자체가 스스로 자체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일 잘 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내부통제활동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있음

### 3.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 가. 미국

- 미국에서 법령상 최초의 자체감사기구인 1970년대 중반 집행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의회의 불신을 반영하여 1976년에 설립, 대부분의 자체감사기구인 1978년 자체감사법(Inspector General Act)과 1988년의 개정된 자체감사법(Inspector General Act Amendments)에 의하여 설립됨

- 미국의 자체감사관(Inspector General: IG)은 24개의 행정부처와 기타 연방기관에 설치되어 있음

-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자체감사관을 임명. 자체감사관은 독립된 단일기구로 감사와 조직의 책임을 맡으며, 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적인 감독을 받음

- 자체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과 수집권 및 소환권을 갖고 있으며 자체감사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도 행사함

- 자체감사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와 자료의 소환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소속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철저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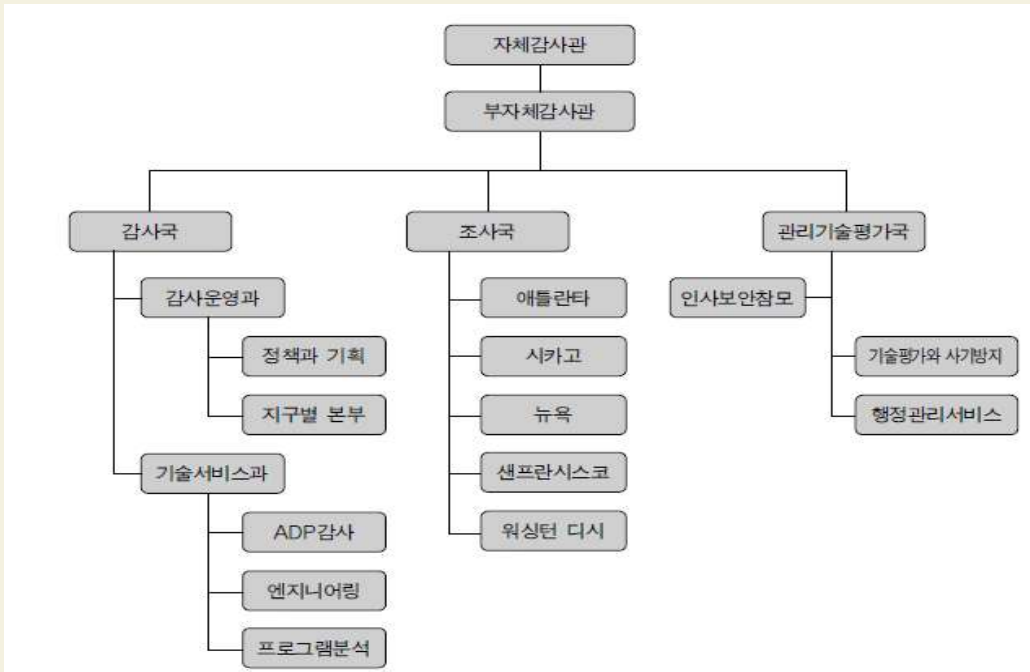
- 자체감사관의 임무(mission)는 1)기관의 재무거래, 프로그램 운영, 행정활동을 검토하는 것, 2)가능성 있는 범죄와 민사위배(civil violation)의 진술 혹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 3)기관의 경제적·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 4)기관의 규제와 입법을 검토하는 책임이 있음

-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자체감사기구를 살펴보면, 환경보호청에는 1980년 1월 7일에 자체감사관이 설치되었으며 환경보호청장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고, 환경보호청장에게 감사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환경보호청의 자체감사기구인 자체감사관 산하에 자체감사관의 중요한 협력자인 부 자체감사관(deputy inspector general)이 있으며, 또한 자체감사관은 3개의 주요한 부서인 감사국(Office of Audit), 조사국(Office of Investigation), 관리·기술평가국(Office of management and

Technical Assessment)을 통하여 자체감사의 임무를 수행함

[그림]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체감사기구도



(자료: 이영균, 2007)

■ 미국 시정부는 대체로 시현장에 자체감사기구를 규정하고 있음

- 뉴욕시정부의 자체감사기구를 살펴보면 강(強)시장형태인 뉴욕시정부의 자체감사기구는 시장과 시의회를 견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감사관(Comptroller)이 시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와 통제기능을 수행함

■ 뉴욕시 감사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1)시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시의 활동, 재무정책, 계약에 관하여 공익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비판 및 조언을 담당함

(2)시의 재정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회계감사 및 조사,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며, 시가 맺은 계약에 대해 2년 내의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함

(3)시의 모든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감사관은 비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음

(4)감사관은 시의 재무계약, 시의 공식구조, 이자증식 기타 시의 매년 수입, 시에서 민간에 제공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함

(5)감사관은 시에서 하는 각종 활동이나 시책에 자금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함

(6)감사관은 자금이 지출되기 전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관의 확인(warrant)없이  
정당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은 4년 임기의 시감사관 산하에 법무감사 담당관(legal affairs), 구제·  
탄원·계약감사 담당관(Claims/Adjudications&Contract Administration), 제1감사담당관(First  
Deputy Comptroller), 정책예산 감사담당관(Executive Deputy Comptroller), 자치단체 관계 감  
사담당관(Dept. Comptroller Intergovernmental/Community Rel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의회의 감사위원회는 시장, 시감사관, 시의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  
는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1년 임기의 감사위원회 의장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함에 있어 정부법인(GC: Government Corporation) 및 각종 준정  
부기관의 지배구조는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상근 이사회가 최고 지배기구인 경우(예: 과거의 TVA), 비상근이사회와 CEO가 있는 경  
우(예: 현 TVA), 각부처장관급이 비상근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예: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정부와 민간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예: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CEO가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보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  
(예: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innie Mae) 등 매우 다양함

• 이와 같이 최상위 지배구조는 다양할 수 있으나 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공적 조직에  
있어 독립상근감사(Inspector General:IG)는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내  
부통제조직을 거느리고 있어 독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의 내부감사를 수행하여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도 함

•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설치  
되고 내외부감사에 관한 문제를 책임짐

## 나. 영국

■ 영국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은 의회를 대신하여 공공지출을 상세하게 조사하  
며(scrutinize) 그리고 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하고, 현재 800여명의 감사요원이  
근무하고 있음

• NAO는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의 회계에 관한 감사의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의회에 대  
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의회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

- NAO 감사원장(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은 종신적으로 수상의 제청에 따라 영국 왕이 임명하며, 양원의 합동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되기 때문에 신분상의 독립성이 매우 강함

- 감사원장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자금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게 보고하는 것임.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자금(public money)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매년 수백만의 납세자(taxpayer)의 자금을 절약하게 하는 것임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지방정부와 보건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관을 임명하는 책임이 있음. 반면에 스코틀랜드(Scotland)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경우, 각 지역의 감사원장(Audit General)이 공공기관의 금전적 가치와 회계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영국의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NDPB(Non-Departmental Public Bodies)는 집행형(executive), 자문형(advisory), 판정형(tribunal)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집행형 NDPB는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며 종업원은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며 최고책임자는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 구성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 집행형 NDPB는 재무부(Treasury)가 제정한 정부내부감사기준(Government Internal Audit Standards: GIAS)에 따라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각 집행형 NDPB는 자체적인 내부감사부서를 두든가 외부법인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내부감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

- 집행형 NDPB는 또한 재무부의 정부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속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와 같은 내부감사에 대한 규정은 공기업(PC: Public Corporations)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모범사례(good practice)로 권장함

## 다. 캐나다

▮ 캐나다 연방정부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인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에 대하여 책임을 짐. 재무위원회의 자체감사본부(the Centre of Excellence for Internal Audit: CEIA)는 재무위원회의 자체감사 정책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감사를 향상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을 수행함

- CEIA는 1)각 부처의 자체감사 기능을 감시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분석과 연락부서(Analysis and Liaison), 2)채용과 교육하는 일반 부서(Community Development), 3)감사도구의 개발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기준 및 정책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책과 특별한 프로젝트 부서(Policy and Special Projec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연방정부와 기관은 재무위원회 자체감사의 정책에 따라 보편적인 자체감사 기능을 갖추어야 함.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자체감사요원은 350명이며 주정부는 주정부 자체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조직함.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자체감사정책에 의해 결정됨

- ▮ 캐나다 정부는 정부의 신뢰(confidence)를 위하여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함. 캐나다 정부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갖추는 것은 위기관리(risk management), 건전한 자원관리(stewardship),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시각임

- 연방정부의 정책은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갖추는 것임. 연방 부처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부처의 장에 의하여 임명됨

- 이들의 임명과 해임은 공무원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부처내에 효과적으로 자체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캐나다 자체감사기구는 부기관장 소속이며, 계선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음

-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위원회는 부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즉 부기관장이 부처의 자체감사기구 업무영역의 적절성에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자체감사기구는 전문적 자체감사표준(professional internal auditing standards)에 따라 감사 업무를 운영하여야 함

- ▮ 자체감사요원들은 공무원 경쟁시험을 통하여 충원됨. 이들 자체감사요원은 기능적 참모(operational staff)가 아니라 전문가적 감사관(professional auditors)으로 충원되며 기능적 참모는 훈련을 통하여 감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전문적인 자체감사요원들은 회계학, 감사관련 자격과 적절한 학문적 배경이 요구됨. 이들 자체감사요원들은 자체감사기구에 항구적으로 근무하도록(a permanent basis) 임용되지 만, 공무원들은 제한된 기간내에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CEIA는 초임 감사요원과 상위직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교육을 제공함. 이처럼 캐나다는 자체감사기구에 자격 있는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은 1)부처의 위기관리 전략과 실제(department's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practices)에 대한 점검, 2)관리통제의 틀과 실제(framework and practices)에 대한 점검, 3)의사결정과 보고에 활용되는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재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자체감사계획을 가장 위험한 영역인지 그리고 중요한 영역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검토, 재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프로그램 기간의 승인(approval of program terms) 조건으로서 감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라. 일본

▮ 일본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내부감사기구가 주로 회계부서 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로 회계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예산결산 및 회계령’에 의해 이루어짐

- 일본 중앙정부의 내부감사기구는 중앙부처의 내부 부·국에 설치된 감사기구로서 자신의 내부 부·국을 감사하며 해당 중앙부처의 모든 조직에 대한 회계검사를 총괄하는 분권적 구조를 가짐

- 회계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재무성이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자체감사기구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정책은 중앙회계감사원이 담당하고 성과감사(즉, 정책 및 행정평가)와 관련한 정책은 총무성이 담당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담당과 내의 관(官), 반(班), 계(係) 등이 감사를 담당하는 경우와 회계담당 내에서 감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하는 겸무형이 많은 실정임.

-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기구를 기관장에 소속시키고 감사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감사보고 수준을 담당과장보다 상위직으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자체 회계감사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회계감사원에서 회계감사의 기본 이념과 지식·기법을 교육하고 각 부처에서는 별도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공공기관은 우리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특수법인과 독립행정법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독립행정법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법 제39조에 의해 내부감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 특수법인의 경우 내부감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나 통상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상근내부감사를 둠

표 7 주요국의 내부감사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내부감사기구	○	○	○	○
자체(내부)감사기구 설치 관련 법령	1976년 설립, 1978년 자체감사법에 의해 설립	내부감사기구 설치, 운영에 대한 입법화 되어 있지 않으나 각 부처나 기관에 설치	내부감사기구 설치, 운영에 대한 입법화 되어 있지 않으나 각 부처나 기관에 설치	각 부처별 정부령이나 조직령에 근거하여 설치

주요 업무범위	합법성 감사, 재무감사	합법성 감사, 재무감사	합법성 감사, 재무감사	합법성 감사, 재무감사
감사업무수행 기구	각 부처에 감찰관실 존재, 최고재무관리관(CFO O)이 재무감사	각 부처에 내부감사기구 설치, 운영, 회계관이 예산지출의 통제와 책임	부기관장 산하에 내부감사기구 설치, 재무감사	재무부에 의한 사전적 재정·회계통제

## 마. 외국 사례의 시사점 도출

- ▮ (외국 사례 비교 목적)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새로운 내부감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부통제가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함에 있음

  - 유럽의 원칙, 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의 공공기관에 맞는 내부통제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의미 있는 기능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함
  
- ▮ 각 주요국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연금이나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법인을 설립하고 공공적인 성격 또는 더 시장지향적인 사업 등을 정부 대신 수행하게 함

  -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지며 부분적으로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주무부처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음
  
- ▮ 해외주요국들은 재무감사의 업무범위에 내부통제감사와 합법성 감사를 포함하고 있음. 내부통제는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재무관 또는 회계관 등에 의해 이루어짐

  - 미국의 내부감사기구로는 각 부처에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일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최고재무관리관(CFO: Chief Financial Officer)이 재무관리활동을 통제하고 있음
  -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각 부처에 내부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관은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 및 책임을 지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부기관장 산하에 내부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재무위원회사무처(Treasury Board of Secretariat)에 소속된 회계감사국의 내부감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은 내부감사는 재무부에 의한 사전적 재정·회계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프랑스의 경우 재무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재정통제관을 파견하고 있음

■ 영국이나 캐나다는 내부감사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 부처나 기관에 내부감사기구가 존재함

- 영국의 경우 회계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캐나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내부감사정책(Policy on Internal Audit)에 따르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각 부처별로 정부령이나 조직령에 근거하여 내부감사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미국은 분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

- 내부감사기구는 기관장 소속이거나 부기관장 소속으로 나타났고 영국과 캐나다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부감사인력은 법규에 임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채용시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종의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 내부감사 조직체계상의 독립성, 감사활동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리고 감사인력의 독립성, 감사활동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리고 감사인력의 독립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체감사기구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자체감사기구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임용하고 있으며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감사책임자는 공인내부감사자(CIA) 등 감사자격증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사관련 전공자로 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함
- 감사책임자의 임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준 또는 지침도 있음
- 미국의 경우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의무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음. 감사전문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교육내용은 직급별·업무별로 세분화되어 있음.
- 감사서비스의 경우는 아직 민간에서 도입하는 전사적 위험관리나 컨설팅 등이 주를 이루는 단계는 아니지만 성과감사의 비중확대, 내부통제 점검 등 현대적 감사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4.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분석

### 가. 감사운영 현황

■ 공기업 감사현황 분석(13.7.23.일 현재) 공기업 30개 기관 중에 항만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기관 3개를 제외한 27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상임감사위원회, 7개 기관이 상임감사, 2개 기관이 비상임감사를 운영하고 있음

표 8 공기업 감사현황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18)	상임감사 (7)	비상임감사 (2)	기타
시장형 (1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1개)	한국중부발전(주) (1개)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2개)
준시장형 (16개)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7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6개)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개)	여수광양항만공사 (1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준정부기관 감사현황 분석(13.7.23.일 현재) 준정부기관 87개 기관 중 상임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 1곳(한국거래소), 상임감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32개 기관, 54개 기관이 비상임감사를 운영하고 있음

표 9 준정부기관 감사현황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 (1)	상임감사 (32)	비상임감사 (54)
기금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리형 (17개)</p>		<p>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3개)</p>	<p>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4개)</p>
<p>위탁집행형 (70개)</p>	<p>한국거래소(1개)</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19개)</p>	<p>(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p>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0개)
--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

-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추진 경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사·보수와 연계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과 내부 견제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음

  - 2007년 5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2007년 실적을 대상으로 2008년에 최초로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실시
  - 이후 공공기관운영법상의 다른 성과평가제도와와의 일관성과 평가지표 단순명확화 필요성에 따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2008년에 수정, 수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2008년 실적을 대상으로 2009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 (2008년도 첫 평가) 200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위해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2009년 3~6월까지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함

  - 상임감사평가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의 경영평가단의 리더십·전략팀과 계량반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의견조회결과를 고려함
  - 공기업이 작성·제출한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임감사 면담 및 공기업 실사를 통하여 필요한 평가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상임감사 및 공기업의 의견개진 및 설명·토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는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와 관련된 비계량 지표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로 구성, 가중치 합계는 100점으로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10점),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15점),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20점),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10점),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15점) 및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30점)로 구성함
  - 비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성과 및 노력정도를 6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계량 및 비계량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한 후 최종 6등급으로 환산하였음
  - 대다수의 기관이 “C”이상의 평가등급을 획득하였고, 4개의 기관이 “D” 등급을 획득하였음 (공기업1(SOC 기관), 공기업2(서비스진흥제조 기관), 공기업 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비상임감사 직위로 평가 제외)

표 10 2008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요약

유형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공기업 1	-	1(7.7%)	5(38.5%)	6(46.1%)	1(7.7%)	-
공기업 2	-	1(10.0%)	3(30.0%)	3(30.0%)	3(30.0%)	-
공기업 전체	-	2(8.7%)	8(34.8%)	9(39.1%)	4(17.4%)	-

■ (2009년~2012년 평가결과 분석) 2009년도 감사평가를 받은 기관은 52개, 2010년도는 53개, 2011년은 59개, 2012년은 58개 기관임

- 2009년: 우수(A) 9개, 양호(B) 17개, 보통(C) 17개, 미흡(D) 9개 기관임
- 2010년: 우수(A) 10개, 양호(B) 13개, 보통(C) 23개, 미흡(D) 7개 기관임
- 2011년: 우수(A) 9개, 양호(B) 19개, 보통(C) 22개, 미흡(D) 8개, 아주미흡(E) 1개 기관임
- 2012년: 우수(A) 7개, 양호(B) 24개, 보통(C) 17개, 미흡(D) 9개, 아주미흡(E) 1개 기관임

■ (2012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분석) ‘13.6.18일에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임

•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단은 밝히고 있음

표 11 2012년도 감사 평가결과 등급 분포

(단위: 개)

	기관수 (비중)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12년	58 (100%)	-	7 (12.1%)	24 (41.4%)	17 (29.3%)	9 (15.5%)	1 (1.7%)
'11년	59 (100%)	-	9 (15.3%)	19 (32.2%)	22 (37.3%)	8 (13.6%)	1 (1.6%)

표 12 2012년도 감사 평가결과 등급 분포

등급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33개)
S(-)	-	-
A(7개)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개, 12.0%)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 12.1%)
B(24개)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13개, 52.0%)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개, 33.3%)
C(17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2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1개, 33.3%)
D(9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3개, 12.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예탁결제원 (6개, 18.2%)
E(1개)		한국환경공단 (1개, 3.0%)

## 다. 공공기관에서의 내부통제제도

▮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서 공공기관 감사가 투명한 경영전략부문의 견제 역할, 경영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컨설턴트의 역할, 내부리스크를 평가하고 경영품질 혁신을 하는 역할, 민간부문과의 정보교류 확대로 지식경험을 공유 및 경영활동을 상시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부통제제도의 가치는 사후적, 외부적 통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책임의 설정, 직무분리, 절차의 문서화, 독립적 검증 등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고양하는

것으로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는데 있음

표 13 감찰, 내부감사, 내부통제 비교

구분	감찰기능(Inspection)	내부감사기능(Internal Audit)	내부통제기능(Internal Control)
주기	임시적, 부정기적, 비밀리 시행	정기적, 주기적, 계획적으로 시행	지속적, 영속적인 기능
위치	조직의 외부기관, 조직체계상 상급기관이 수행	내부에서 시행	경영의 한 부분으로 통합적으로 수행
대상	불신과 제보에 의해서, 조직의 활동(내용), 사람 등에 관한 (확인) 조사	신뢰에 근거를 둔, 경영 및 통제 시스템(MCS: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결과 등을 검토(평가)	조직의 경영(역량과 수준), 위험성 진단
목표	적법성 확인, 부정부패 탐지(불법사항 발견)	효과성	관리(건전한 재정경영)
방법론	개별정보, 의심, 고발, 제보 등으로 지칭, 규정준수와 같은 법령 준수를 확인	적법성, 기준(Standards),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근거하여 평가, 조언	위험성 제거, 효과적인 경영체제 등의 근거들에 근거하여 지속 추진
결과처리	상벌 제재	제안(조언, 권고)	(행동전략 등에 의한) 규정 확보
책임성 수준	조직의 적법성 보장	조직의 합리적 안정성을 인정하는 '의견' 제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직업인	경찰, 조사관, 감찰관 등	전문경력직에 의한 자문, 고문 평가	조직, 기업 등의 (최고) 경영책임자

(자료:안영훈, 2013)

- ▮ (내부통제의 목적) 업무관리의 실효성·효율성 확보, 회계보고의 신뢰성 확보, 법규준수임
  - 관리통제(management control),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업무감사(operation auditing) 등이 구축, 운영되어야 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확립이 요구됨
  - 법령·윤리규정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
- ▮ (공공기관 내부통제) 공공기관에서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투명성(transparency)와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자 함
  - 투명성은 책무성을 실천하는 과정, 절차 및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투명성을 제고하

는 방안으로는 기관의 주요사업을 공개, 재무회계결산을 공개, 공청회 개최나 기업공개 등을 생각할 수 있음. 특정 활동에 대해 투입된 자원의 출처, 사용된 용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미함

- 책무성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성과 기대치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의미함. 재정적 회계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질, 주장 또는 캠페인 전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관련됨. 기관의 가치, 사명, 전략들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함을 의미함

-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에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다음의 표를 통해 정리)

표 14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비고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내부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로서 기관장의 스타일, 조직구조와 조직내부의 권한 배분, 기관 감사능력, 구성원의 성실성·윤리의식·능력 등을 포함	ex)기관장 비전, 중점사항, 위임전결규정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사업활동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 법규의 준부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확인하는 절차	ex)위험: 피해 또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지만 내재되어 있는 상태 ex)위험: 내재되어 있던 위험요인이 표출되어 피해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예상되는 상태 ex)위기: 피해 또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통제활동(Control activity)	조직구성원이 목표달성과 위험대처 등을 목적으로 기관장 등이 제시한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안한 제반 정책이나 절차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	ex)업무분장, 정보 및 자산에 대한 접근 통제, 조직의 분립과 상호견제, 상급자의 승인 및 결재 등을 포함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조직구성원의 책임을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정보를 확인·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	ex)정보의 생성·집계·보고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을 포함
모니터링(감시, Monitoring)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	ex)조직 전체 또는 조직 단위에 대한 자체평가, 자체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

- 내부통제 체제의 설계는 업무분장, 승인절차, 업무처리의 문서화, 접근 또는 사용 통제의 절차, 내부검증절차 및 내부감사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다음의 표를 통해 정리)

표 15 내부통제 체제의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업무분장(Segregation Functions)	한 사람이 양립불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오류나 부정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통제 절차	ex)한 사람이 예산배정, 자금배정, 회계처리 등
승인절차=결재(Authorization=Approval)	모든 행정행위가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통제절차	ex)위임전결규정 등
업무처리의 문서화(Documentation)	행정행위 이행단계별로 그 처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 통제절차	-
접근 또는 사용 통제의 절차(Access Control)	기관의 각종 자산이나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접근 또는 사용을 통제하는 절차	ex)권한배분, ID, 비밀번호, 행정전자서명 등
내부검증절차 및 내부감사기능	-내부검증절차: 업무분장을 통하여 수행한 업무처리 내용을 다른 사람이 체크 -내부감사기능: 내부감사업무는 감사에 의하여 수행	ex)계산의 정확성, 내부자료와 원시자료 대조, 재고실사 결과와 회계 기록 대조 등

## 5.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 가.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

- ▮ (공공기관 감사의 문제점) 공공기관의 감사가 회사의 공공조직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감사의 상임여부) 상임여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비상임감사체 제로는 회사의 업무과약도 쉽지 않는데 경영감시기능과 내부회계자료를 감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감사가 회사의 중요한 내부통제 및 경영감시기구로 제 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됨
  - (독립성의 문제) 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내부기구이지만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지배구조의 하나이며 감사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함.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임명은 대부분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임명권을 가지고 외부인사가 임명하고 있음. 짧은 임기(2년) 문제도 독립성을 저해함

- (업무관련 전문성 문제) 감사선임절차에 있어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어 경영능력과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되어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일조하고 내부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음

-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부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점에서 시작해, 준법감시인에게 지나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고 준법감시제도 자체의 문제를 발생시킴. 내부통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문제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도 시스템을 통한 관리보다는 사람을 통한 관리를 선호하고 있고 내부통제를 단순한 통제절차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임

▮ (내부감사운영의 문제점) 우리나라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독립성) 독립성 측면에서 소속 및 보고체계에서, 조직구조에서, 감사책임자의 위상 및 권한에서 문제점이 있음.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소속과 보고의 문제, 감사활동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 전담기구 설치율이 낮음의 문제, 책임자의 직급이 수감기관의 장보다 낮게 부여 되는 점, 대부분 내부발령으로 신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사권이 제한되는 점의 문제 등임

- (전문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감사책임자의 감사업무 경력, 담당자 근무기간,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감사담당자의 전문 자격증 보유,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에서 문제가 있음. 감사경력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며 감사경력이 있는 경우 평균 2년 미만임. 평균근무기간이 2년 정도임. 전체기관의 60%정도가 감사교육원의 단기교육을 이수함. 대부분 기사자격증 보유, 과반수의 기관이 인센티브 미제공의 현실임

▮ (이외의 문제점) 적용대상, 범위의 한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감법을 통해 일부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회계에 대한 통제에 한정된 것으로써 현대의 내부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즉 다양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 우리나라 내부통제기준은 COSO보고서에서의 내부통제중 범규준수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미국의 SOX법 제404조

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으로 있는 것에 비해 검토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유효성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감법의 제한적 기능으로 인해 내부통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나. 결어: 개선방향 모색

- ▮ 우리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독립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운영이 되어야 함
  - 감사직렬의 신설, 신분보장,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여 관련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개선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내부통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함
  - 인력 충원시 전문 인력의 확보 노력, 교육 및 훈련의 강화, 인력배치의 적합성 고려, 외부전문가 및 자체감사위원회의 활용이 계속 되어야 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공감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됨과 더불어 외부감사기구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감사체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임
  
- ▮ 감사 직원들이 자기계발, 통제 리스크를 평가를 통해 자율 관리가 되어 감사 역량 증진이 이루어져야함
  - 기관장(최고경영자)의 배려와 감사 업무 수장인 상임감사의 지원이 감사 전문성 향상과 독립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이런 과정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 공공기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내부통제는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보완, 직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관장(CEO)의 경영철학, 평생교육, 행동규범, 기업이념이 1)강제 통제에서 자율적 통제로, 2)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3)수작업 통제에서 시스템 통제로 4)업무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5) 통제를 위한 통제에서 업무효율 제고로 6)절차 완성후 통제반영에서 절차설계시의 통제 반영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들이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 자율규제 부분에 주목하여 윤리경영 부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제도의 지향점이 윤리경영, 투명경영 쪽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혁신도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결어) 내부통제제도의 성공에 중요한 내부적 요소로 기관장(CEO)의 의지(tone at the top)나 노력, 경영방침의 구체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므로 기관 차원에서 환경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결국 내부통제의 성과도 사람, 조직, 인프라, 제도, 규정 등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 합리적으로 운용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을 분석해보고자 했으나 감사 운영의 현황분석 정도에서 머물렀으며,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기대에 못 미침

## 참고문헌

김용범, 2012, 『현대내부감사:이론과 실제』, 어울림

김명수 외, 2008, 『자체감사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2013.4., 『내부통제평가사 자격프로그램』 교육자료

김경호 외, 2012.7.,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공병천, 2012.8.,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제도의 중복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성과관리제도의 중복성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조형석·류숙원, 2012.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김병국 외, 2011.9.,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허명순·차경엽, 2010.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감사원 감사연구원
- 허명순·박희정, 2009, 「공공감사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내부감사체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4호
- 김경석, 2010.3.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 이영균, 2007,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제2호
- 김용철, 2007, 「현행 공공감사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17권 제1호
- 이용수, 2005,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및 미국의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2013.7.12.,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명회」 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2012.8.,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2009.8., 『2008년도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평가분석과, 13.6.18.),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발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2011.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2013.5.,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 지침』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2013.7., 「감사업무 매뉴얼」

국립공원관리공단, 2013.7., 「2012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매뉴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 개정]

감사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8.28]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시행 2010.1.1] [일부개정 2009.12.22.]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0.7.1] [일부개정 201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7.6] [감사원규칙 제211호, 2010.7.6,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 [법률 제11758호, 2013.4.5., 일부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 [법률 제9408호, 2009.2.3., 일부개정]

## [부록]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분석

- ▮ (지표별 분석) 평가지표는 6개의 평가지표(90%)와 기관경영평가결과(10%)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착안사항으로 구성되며 관리방법, 실행, 학습의 3가지 평가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 평가지표는 9단계 등급으로 평가하고, 최종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산출
  - 평가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의 범주와 기관경영평가 범주로 구성됨
  -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는 1)감사의 전문성·윤리성·독립성 확보노력 및 성과, 2)내부통제기능강화 노력 및 성과, 3)내부감사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4)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5)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의 적정성, 6)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며 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함

표 16 감사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감사의 전문성·윤리성·독립성 확보	15
	내부통제 기능강화	15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25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10
	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	10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15
	소계	90
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반영	10
	소계	10
전체합계		100

- ▮ (지표1: 감사의 전문성·윤리성·독립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윤리성·독립성 확보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함. ① 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②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이 적절하였는가? ③ 감사의 독립성 확보노력이 적절하였는가?

- 주요착안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성과 관련해서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감사 대상 영역별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감사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있었는지, ▲전문성 확보 및 노력에 대한 성과 측정을 위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성과분석을 위한 학습과 개선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임

- 윤리성과 관련해서 ▲감사가 재임기간 중에 윤리준수 등 직무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감독부처의 지적 또는 일반국민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지, ▲윤리기준 준수노력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성과분석을 위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임

-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부서원에 대한 인사 및 업무평가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독립성 확보노력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성과분석을 위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임

■ (지표2: 내부통제 기능강화)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에 관하여 평가함. ①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이 적절히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②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및 개선노력은 어떠한가? ③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이 적절하였는가?

- 주요착안사항으로는 ▲감사전략과 중기감사계획, 방만경영 위험요소, 내부통제 위험요소 및 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감사계획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기관 고유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과악 정도 및 위험에 노출된 영역에 대한 파악이 적절한지, ▲사고발생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는지, ▲예방적 감사를 위한 부서별 자체 리스트가 존재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감사성과가 증대하였는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경영건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실적이 우수한지, ▲사고발생시 사후조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였는지, ▲감사의 품질평가를 통해 내부통제구조의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임

■ (지표3: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 감사원에서 수행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25점의 기준치를 부여하며 세부평가내용은 없음

- 참고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별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20%), 감사활동 분야(40%), 감사성과분야(30%), 사후관리분야(10%)로 되어 있음

표 17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항목	심사지표(배점)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		20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2)
	충분성	감사인력수(4)
감사기구의 장	독립성	개방형 임용정도(3)
	전문성	감사기구 장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3)
감사담당자	전문성	감사부서 평균 근무경력(2)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2)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4)
감사활동 분야		40
예방감사활동	충분성	일상감사 이행노력도(8)
	적정성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 정도(4)
실지감사활동	충분성	연간 감사연인원 정도(4)
	적정성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7)
감사결과처리	적정성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11)
감사자원 공유 및 활용	협력성	관계기관 협조 정도(3)
		감사정보시스템 활용도(3)
감사성과분야		30
회계검사	재무조치성과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12)
직무감찰	신분조치성과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10)
기타분야	기타성과	행정상 조치 및 모범사례 발굴실적(8)
사후관리분야		10
사후관리	충분성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4)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4)
감사결과 공개	적정성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2)

■ (지표4: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예방활동 실적,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와 수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①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 목표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는가? ② 방만경영 예방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지적받은 방만경영 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및 수준은 어떠한가? ③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였는가?

- 주요착안사항은 ▲수립된 장단기전략계획의 수준이 피상적이고, 장단기 목표와 성과지표의 체계가 느슨하지 않은지, ▲작년에 요구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성과지표에 기관 감사활동의 방향성과 목표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방만경영 사전예방활동이 인센티브

또는 내부평가체계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방만경영 예방에 관한 대표성과 중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 관련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내부자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신고·보상의 익명성이 규정상으로만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측정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임

- (지표5: 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노력을 평가하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및 수준, 사후관리노력을 평가함. ①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관리 목표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②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및 수준은 어떠한가? ③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이 적절했는가?

- 주요착안사항은 ▲감사는 기관이 정부의 경영지침사항을 위반할 위험요소 및 영역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지, ▲경영지침 위반 위험요소 및 영역을 파악함에 있어 경영지침 미준수 지적사례 및 잠재적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파악 및 분석된 위험요소를 고려한 착안사항을 경영지침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감사계획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일상감사활동 등을 통하여 주기적·상시적 점검활동을 수행했는지, 점검활동 수행결과 경영지침 위반사례가 지적되었는지,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경영지침 위반사항 및 조치계획을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적기에 보고하였는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 및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적기에 보고하였는지, ▲경영지침 위반과 관련한 외부(감사원 감사포함)로부터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동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및 수준은 어떠한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사후관리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 조치계획의 이행 완결여부에 대한 점검활동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조치계획의 이행수준은 어떠한지, 조치계획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 어떠한 해결노력을 수행했는지, ▲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통하여 경영지침 준수노력을 위한 학습과 혁신활동 그리고 감사착안사항으로 적절히 환류(Feed-back)되고 있는지 등임

- (지표6: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투명·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의 활동 및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기관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를 함께 고려함.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② 감사는 투명·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③ 해당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 주요착안사항으로는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감사는 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회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범위와 그 적정성은 어떠한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사전점검활동 및 결산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떠한 조치성과가 있었는지, ▲감사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내 관련교육 실시, 청렴계약제도 운영, 주기적인 점검활동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을 통한 제도 개선 실적이 있는지, ▲투명윤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등 임